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문산읍 주공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아파트 부지내 2개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 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문산읍 문산리 일부 → 문산읍 당동리로 편입.

변 경 전			변 경 후		
리	필지수	면 적	리	필지수	면 적
계	3	3,058m'	계	3	3,058m'
문산리	3	3,058m'	당동리	3	3,058m'

계	전	도 로	임 야
3필지 3,058m'	1필지 1,124m'	1필지 30m'	1필지 1,904m'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문산 주공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문산리와 당동리등 행정리간 경계부분에 조성됨에 따라 같은 단지내에 2개의 리구역이 혼재되어 해당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비롯하여 우편, 통신, 행정업무 관리에 불편이 초래됨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생활편익과 행정구역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같은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에 문제점이 없으며,
- 리구역의 분할과 편입내용에 있어서도 리경계가 혼재된 대상부지 중에서 건축물이 다수 점유된 구역으로 작은 구역을 편입하는 것으로 그 조정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